

[별표 2] <개정 1991.1.29, 1994.10.4, 1995.1.21, 1996.12.30>

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(제14조제3항 관련)

위 반 행 위	해 당 법 조 문	과태료 금액
1. 법 제10조(법 제55조 및 법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위반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1호	50만원
2. 법 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1호	20만원
3. 법 제17조(법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2호	50만원
4.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사고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고지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2호	50만원
5.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2호	50만원
6. 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3호	20만원
7.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3호	20만원
8. 법 제3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3호	50만원
9. 삭제<1995.1.21>		
10. 삭제<1995.1.21>		
11.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4호	300만원
12. 법 제25조제1항(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4호	300만원
13. 법 제32조제1항(법 제55조의 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4호	300만원
14.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4호	300만원
15. 법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4호	300만원
16.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4호	300만원

17. 법 제50조(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5호	100만원
18.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5호	100만원
19.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5호	100만원
20.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5호	50만원
21.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6호	100만원
22. 법 제33조의5제1항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한 자	법 제75조제2항	20만원
23. 법 제33조의5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	법 제75조제1항제3호	300만원